【별지 1】

공통심사 기준표

			·	
심사항목 합계	총점 100		세부항목	배점
1. 운영체의 공신력	10	도덕적·법적 공신력 -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·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-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-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		10 8 6
2. 운영체의 운영 실적	10	-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-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		10 8 6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35	-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(인증)제 결과	 평가 인증 또는 평가등급 A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그 외 	10 7 4 1
		-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	 10년 이상 7년 이상 ~ 10년 미만 5년 이상 ~ 7년 미만 3년 이상 ~ 5년 미만 3년 미만 	10 7 5 3 1
		- 공모사업 수상실적 - 관련 법령 이해 수준	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	5 4 3
		-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- 운영의지 - 향후 발전계획	•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	10 8 6
4. 어린이집 운영 계획	40	- 보육사업계획	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	20 16 12
		-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	●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* 보육프로그램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, 재정지원, 회계·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	10 8 6
		- 예산의 적절성	• 세입·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	10 8 6
5. 운영체의 재정 능력	5	-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		5 4 3

※ 비元

- 1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(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나. 최근 5년 이내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
- 다.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
- 라.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
- 마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2.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.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.
- 3.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, 운영체의